

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
제205회 제1차 정례회(2016.06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
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복 지 도 시 위 원 회
전문위원 김 용 범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6년 6월 10일(金), 백남환 의원외 17명

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6년 6월 10일(金)

4. 관련 법령

- 「하수도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5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「하수도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의 대행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업체의 선정 및 평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사업 업무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.

6. 주요 내용

- 가.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와 대행사업 등 용어 정의함(안 제2조)
- 나. 분뇨수집·운반 등의 대행기간을 2년→3년으로 확대함
(안 제9조제3항)
- 다.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 만료 6개월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후 대행업체 적정여부 판단도록 규정함(안 제9조제4항)
- 라. 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신설 조항을 규정함(안 제9조의2)
- 1) 대행업체 선정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, 관련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
 - 2) 사업계획서 제출 시 포함할 내용(청소예정구역 등)
 - 3)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
 - 4) 대행업체 변경 시 대행기간 동안 업무인계하고, 주민불편 초래하지 않도록 협조
 - 5) 대행업체 대행계약 해지할때에는 해약 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
- 마. 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신설 조항을 규정함 (안 제9조의3)
- 1)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처리 수집·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
 - 2) 평가기준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용한다
- 바.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 조항을 규정함
(안 제9조4)

1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

1. 대행업체 선정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
3.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
4.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
5. 계약해지, 영업구역 축소·변경 등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사.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신설 조항을 규정함(안 제9조의5)

- 1)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하다.
- 2)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함
 1. 학계, 법조계, 언론계 등 전문가 1명
 2. 해당분야 전문가 1명
 3. 주민대표 3명
 4.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
 5. 관계 공무원(단,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)
- 3)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
- 4)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, 업무담당 주사가 됨

- 5)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6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아. 위원회 회의 등 신설 조항을 규정함(안 제9조의6)

- 1)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2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)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7. 검토결과

○ 본 조례안은 2016년 7월 10일 백남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 복지 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「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」에 대행 사업 업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에 없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대행사업 업무와 대행업체의 선정 및 평가 기준 절차를 명확히 하였고, 공정한 선정 및 평가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여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행업체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행사업 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.